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3. 3 선고 2017가단1131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0. 2. 11

판결 선고 2020. 3. 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9.부터 2019. 5. 31.까지는연 1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%의 비율로
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8. 9.경 피고로부터 발전설비 2호기를 7,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 서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008. 9. 9. 5, 000만 원,같은 해 10. 28. 2, 000만 원을송금하였다.

나.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발전설비 2호기를 납품받지 못하여, 2016년경 피 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7,000만 원 중 4,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(이하 '이 사건 합의'라 한다)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약정한 금액 중 3,500만원(= 4,000만 원 - 500만 원)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9. 5. 9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정한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,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2019.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의하여 2019.5. 31.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의 경우 2019. 6. 1.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%를

적용하게 되므로,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)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에게 위 3,500만 원 외에 추가로 1,31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춘근